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를 발표하고,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범위를 공고했다.

기업의 경제위기 고통을 덜기 위한 정부의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고 건설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업자도 특별사면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실시공과 입찰담합, 금품수수는 제외됐다.

이번 행정제재조치 해제로 경영난에 시달려 온 건설사들의 제약이 다소 해소되고 건설업 관련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I. 특별조치 취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 국내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 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II. 특별조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건설기술자

■ 개요

- 2012.1.10.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타 개별 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자

III. 해제되는 행정처분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 2012.1.10.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의 감점을 포함한다)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 2012.1.10.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2.1.10.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2.1.10.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 부정당업자 제재
-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 경고처분
-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않음

-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3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 행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작·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작·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3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정한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3항에 의한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담합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 경력증의 대여 행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 · 과징금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업무정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정정지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68조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48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제4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영업정지
- 기타 개별법령에서 자격증 · 경력증 대여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IV. 행정처분 해제 효과

1. 개요

- 해제 대상 행정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2.1.12일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 효과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 2012.1.10.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12.1.12.자로 해제

-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12.1.12.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 하도급벌점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 2012.1.10. 이전에 부과된 하도급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2.1.12.자로 해제

- 2012.1.10. 이전에 부과된 하도급벌점에 근거하여 2012.1.12.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음

- 과징금·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 2012.1.10.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2.1.12.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 2012.1.10.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거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2.1.12.자로 해제

- 2012.1.10.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12.1.12.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12.1.12.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 2012.1.10.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12.1.12.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 부과

- 경고 처분

- 2012.1.10.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 및 이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2.1.12.자로 해제

-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는 2012.1.12.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12.1.10.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12.1.12. 자로 해제

• 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3.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12.1.12.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12.1.12.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 중 2012.1.20.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V.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 2012.1.10.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 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 관련기록에 「2012.1.12일자 신년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 · 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자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2012.1.25일부터 1.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 해제대상인 경우 2012.2.7일까지 관련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 관련부처 | 부서 | 연락처 | 소관사항 |
|---------|------------|------------------------|--------------------------------|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2150-5222~3, 5228 | ■ 부정당업자 제재 및 PQ(적격)심사 감점 처분사항 |
| 국토해양부 | 건설경제과 | 2110-8346~8347 | ■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
| | 기술정책과 | 2110-6298~6299 | ■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
| | 건설안전과 | 2110-8397~8398 | ■ 감리업체 행정처분 등 관리 |
| | 건축기획과 | 2110-6210 | ■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
|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 플랜트팀 | 2110-4696 |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 |
| | 전력산업과 | 2110-5475 | ■ 전기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
| | | 2110-5473 · 5476 | ■ 전기설계업자 · 전기감리업자 및 관련기술자 관리 |
| 방송통신위원회 | 네트워크기획과 | 750-2722 | ■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
| 소방방재청 | 소방산업과 | 2100-5387 | ■ 소방공사업자 및 관련기술자 관리 |
| | 소방제도과 | 2100-5328 | ■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사 관리 |
| 행정안전부 | 재정관리과 | 2100-4122 | ■ 지자체 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
| 환경부 | 환경산업팀 | 2110-7766 | ■ 환경전문공사업자 및 관련 건설 기술자 관리 |
| | 폐자원관리과 | 2110-6932 · 6938 | ■ 환경관련 법규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 |
| | 자원재활용과 | 2110-6955 | ■ 환경전문공사업자 및 관련 건설 기술자 관리 |
| | 수생태보전과 | 2110-6845 | ■ 환경관련 법규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 |
| | 기후대기정책과 | 2110-6783 | ■ 환경전문공사업자 및 관련 건설 기술자 관리 |
| | 생활환경과 | 2110-6812 | ■ 환경관련 법규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 |
| | 생활하수과 | 2110-6888 | ■ 환경전문공사업자 및 관련 건설 기술자 관리 |
| | | | ■ 환경관련 법규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2023-4493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2110-7290 2110-7277 | ■ 국가기술자격자의 총괄관리 |
| | 건설산재예방과 | 6922-0951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관련 사항 |
| 문화재청 | 수리기술과 | 042-481-4871 | ■ 문화재 수리업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관련 사항 |
| 조달청 | 시설총괄팀 | 070-4056-7339 | ■ 공공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